

포상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 교수와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의 대상은 본교의 교수와 직원으로서 해당 포상 부문의 세칙에 따라 선발된 자로 한다.

1.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재해 및 기타 손실을 예방한 공로가 있는 자
3. 교육 및 사회적으로 공헌한 바가 지대한 자
4. 업무 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득한 자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제안상,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1. 제안상: 본교 발전에 유익한 제안이 채택된 때의 포상
2. 공로상: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이거나 재해 및 기타 손실을 예방한 공로가 있는 경우의 포상

제4조 (포상의 방법) 포상은 표창장과 표창패 부상(순금메달 또는 상금), 해외 연수, 특별휴가, 인사상의 인센티브 등으로 다양하며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본교 개교기념행사(예배)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결의 요구중이거나 처분이 종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고 교수는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무처장과 총무처장은 추천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위원회에 포상을 상정한다.

제8조 (포상권자) 포상은 총장이 시행한다.

제9조 (공적 심사) ① 포상은 공적 조서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05.01.>

1. 대학 발전 기여도
2. 교육, 연구 및 사회에 대한 공헌도
3. 교육관 및 사명감
4. 성실성 및 창의성

② 총장은 기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해 포상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4.05.01>

제11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